

가족 노숙자 및 퇴거 방지 보조금 (Family Homelessness &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FHEPS) 안내 자료 (Korean)

FHEPS란 무엇인가요?

FHEPS는 현금 지원(Cash Assistance, CA)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퇴거를 당했거나 퇴거를 앞두고 있거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잃은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임대 보조금입니다. 건강 또는 안전 문제로 인해 또는 특정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을 잃은 가족도 FHEPS 적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FHEPS는 전처럼 집에 그대로 거주하거나, 뉴욕 시 내에서 이사하거나, 이미 집을 잃었을 경우 쉼터에서 퇴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HEPS 자격이 된다면 임대료의 일부는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되는 FHEPS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FHEPS 지불금은 귀하가 CA 케이스에 대해 받는 쉼터 수당과 별도인 금액입니다.

귀하 또는 해당 아파트 또는 주택을 함께 나누어 거주하는 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임대료 중 당사자의 몫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HEPS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FHEPS 수혜 대상이 되려면 귀하의 가족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나 직업 또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정규로 등록된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임산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현재 CA 수혜 대상이거나 또는 보호소에 있다면 일단 보호소를 퇴소한 후 CA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쉼터에 입소 중임.
-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쉼터에 입소 중이고 HRA 쉼터 입소 자격이 됨.
- DHS 쉼터에 입소 중이고 쉼터에 입소하기 전 1년 중 어느 시점에 NYC에서 퇴거를 당했음*.
- NYC 내에서 현재 퇴거 절차를 당하고 있거나, NYC 내에서 지난 12개월 내에 퇴거* 당했거나, 임대주 또는 관리 회사로부터 임대료 요구서를 받았음.

*퇴거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주택에 입주한 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퇴거 절차.
- 귀하의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압류 조치.
- 건강 및/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귀하의 건물이나 주택을 나가야 한다는 시 기관의 결정.

FHEPS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있는 가족은 FHEPS를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FHEPS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장을 필요로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FHEPS가 임대주에게 지불할 금액과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구의 FHEPS 임대 보조금은 해당 가구 소득 및 가구의 가족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FHEPS 신청서가 승인되면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들 중 대다수는 FHEPS 및 CA 셸터 수당으로 임대료 전액을 충당합니다. 단,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해당 가구에 속한 누군가가 CA 수혜자이고 직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 SSI 수혜자 등 CA 케이스에 있지 않아도 되는 자가 해당 가구에 포함된 경우.

귀하는 임대주에게 HRA가 지불하는 금액과
임대료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찾는 아파트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FHEPS 표준 보조금은 HRA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입니다. 이러한 표준 보조금은 뉴욕시 주택 관리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이 사용하는 섹션 8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CA 가족 구성원 수 및 세대 규모에 따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일부 예외 적용. 예를 들어, CA 소득과 CA를 받지 않는 사람의 소득이 모두 있는 가구).

CA 가족 구성원 수	세대 규모	표준 보조금
1	스튜디오	\$2,624
1인 또는 2인	1	\$2,696
3인 또는 4인	2	\$3,027
5인 또는 6인	3	\$3,777
7인 또는 8인	4	\$4,070
9인 또는 10인	5	\$4,680
11인 또는 12인	6	\$5,291
13인 또는 14인	7	\$5,901
15인 또는 16인	8	\$6,512
17인 또는 18인	9	\$7,122
19인 또는 20인	10	\$7,733

임대주는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비용을 제외한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계약에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고는 즉시 HRA에 **311**번 또는 **718-557-139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최소 12개월 이상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12개월 이상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서면 합의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임대차는 귀하와 임대주 간의 계약입니다. 시당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납 임대료가 있어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그대로 살 수 있나요?

미납 임대료(때로는 "임대료 체납금"이라고도 함)를 받으려면 해당 미납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주로부터 받은 서면 리스 또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했던 동안 자격이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미납 임대료의 일부로 최대 \$20,000¹의 FHEPS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 지불일에 해당 가구는 법적 세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20,000보다 큰 금액을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케이스별로 고려됩니다.

FHEPS에 대해 따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HRA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FHEPS 임대 보조금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경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HRA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 임대주 또는 해당 임대료를 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
- CA 케이스에 대한 인원 수가 변경된 경우(예: 가족 중 신생아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거주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가구 구성원이 HRA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 FHEPS 보조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을 때 해당 가구의 CA 보조금 및 셸터 수당액이 줄어듭니다. 처벌이 이뤄지면 FHEPS 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처벌이 이뤄지는 한 셸터 수당과 FHEPS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의 금액을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FHEPS 임대 보조금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해당 가구에 더 이상 CA 케이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직업 또는 기술 교육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19세 미만의 재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HRA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셸터 수당, FHEPS 수당 또는 FHEPS 수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대 연체금은 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금액은 12/31/2024까지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FHEPS**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소에 있지 않거나 퇴거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혜택 접근 센터(Benefits Access Center, BAC)에 임대료 연체금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 www.nyc.gov/accesshra 를 방문하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 직접 BAC를 방문하십시오.

셸터에 입소한다면 **FHEPS** 공급자 또는 셸터 주거 전문가/케이스 관리자가 **FHEP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귀하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FHEPS 승인을 받은 셸터의 가족은 가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지원을 예약하려면 케이스 관리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대주는 1개월 임대료 전액과 3개월의 임대료를 추가로 미리 받게 됩니다. 임대주는 지금 보증서도 받게 됩니다.

이미 **FHEPS** 아파트가 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퇴거 위험에 처했거나 DHS 보호소를 퇴소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311** 또는 **718-557-1399**번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의 Homebase 노숙 예방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nyc.gov/site/hra/help/homebase-locations.page> 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Homebase 제공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RA 셸터를 떠난 가족은 **929-221-7270**번으로 전화하시면 현지 지역사회 기반 비거주 프로그램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에 대한 정보는 **FHEPS**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반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